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010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9.
3. 회 부 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음.

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에 더 가까움.

이에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III. 검토의견

1.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김포시의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5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u>김포시법원</u> 관할 법원 변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북부지원)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부천지원 관할구역 변경 (김포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북부지원)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u>김포시법원</u> 관할 법원 변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북부지원)

- 개정안에 따라 관할구역이 조정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1일 신설 예정)과 부천지원의 개정 전 후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의 시행일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신설 예정일인 2025년 3월 1일로 규정됨.

<관할구역 조정>

구분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개정 전(前)	인천지방법원 (본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옹진군	2025년 3월 1일 (현재 북부지원 개원 예정일)
	북부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	
	<u>부천지원</u>	부천시	부천시, <u>김포시</u>	
개정 후(後)	인천지방법원 (본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옹진군	
	<u>북부지원</u>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 <u>김포시</u>	
	부천지원	부천시	부천시	

나.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¹⁾

1) 관할인구

- 김포시의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 3. 1. 개원 예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인구는 97만 3,629명에서 145만 9,801명(48만 6,172명 증가)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인구는 126만 6,140명에서 77만 9,968명(48만 6,172명 감소)으로 변화함.

<김포시 관할 변경에 따른 관할인구 변화>

(2023. 12. 31. 기준)

법원		관할구역	면적(km ²)	인 구(명)
인천지방법원	본원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옹진군	490.94	2,023,781
	북부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	576.1	973,629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330.1	1,266,140
관할 변경 시	북부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 김포시	852.7	1,459,801
	부천지원	부천시	53.5	779,968

2) 예상 사건 수

- 현재 인천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의 관할인구 비율을 기준²⁾으로, 김포시의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되었을 때 예상 사건 수를 추정해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

1)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현재 김포시의 관할인구(48만 6,172명)가 부천지원의 관할인구(126만 6,140명)의 약 38%를 차지하므로, 김포시의 예상 사건 수는 부천지원 사건 수의 38%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함.

지원의 사건 수는 1만 797건에서 6,694건으로 감소하고, 북부지원의 사건 수는 8,826건에서 1만 2,929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김포시 관할 변경에 따른 예상 사건 수 변화>

(2023. 12. 31. 기준)

구 분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부천지원(현재)	400	4,853	381	5,163	10,797
부천지원(김포시 제외)	248	3,009	236	3,201	6,694
김포시(예상사건 수)	152	1,844	145	1,962	4,103
북부지원(현재) ³⁾	311	4,107	377	4,031	8,826
인천북부지원(김포시 포함)	463	5,951	522	5,993	12,929

3) 사법 접근성

- 김포시청에서 현재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까지의 거리는 26.9km이고, 자동차로는 37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11분이 소요되는데, 2025. 3. 1. 신설 예정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까지의 거리는 4.5km이고, 자동차로는 15분, 대중교통으로는 4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할 법원 변경으로 김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있음.

<김포시청에서 부천지원 및 북부지원까지의 사법 접근성 비교>

출발지	부천지원			북부지원		
	거리(km)	시간		거리(km)	시간	
		자동차	대중교통		자동차	대중교통
김포시청	26.9	37분	1시간11분	4.5	15분	44분

<인천지방법원 본원, 북부지원, 부천지원 소재지>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미치는 영향

- 김포시의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인구**는 126만 6,140명에서 77만 9,968명으로 감소하여, 전국 43개 지원(현재 42개 지원+북부지원) 중 순위가 4위에서 13위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상 사건 수의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예상 사건 수는 1만 797건에서 6,694건으로 감소하여 전국 43개 지원(현재 42개 지원+북부지원) 중 순위가 4위에서 12위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북부지원의 경우 예상 사건 수 1만 2,92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사건 수가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부천지원 관할인구 및 예상 사건 수 순위 변화>

순위	지원	인구	순위	지원	인구
1	성남지원	1,640,985	9	부산동부지원	987,880
2	고양지원	1,572,660	10	남양주지원	981,660
3	안산지원	1,429,220	11	순천지원	825,612
4	인천북부지원 (김포시 포함)	1,459,801	12	평택지원	780,056
4	부천지원(현재)	1,266,140	13	부천지원 (김포시 제외)	779,968
5	안양지원	1,045,759	14	진주지원	566,242
6	대구서부지원	1,026,178	⋮	⋮	⋮
7	부산서부지원	1,020,844	43	장흥지원	67,768
8	천안지원	1,001,755	전국 지원 평균		521,835

순 위	법 원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1	인천북부지원(김포시 포함)	463	5,951	522	5,993	12,929
1	성남지원	823	6,945	396	4,489	12,653
2	안산지원	398	4,927	486	5,209	11,020
3	고양지원	553	5,619	411	4,245	10,828
4	부천지원(현재)	400	4,853	381	5,163	10,797
5	부산동부지원	463	4,259	269	3,366	8,357
6	천안지원	297	3,345	311	4,005	7,958
7	안양지원	393	3,489	266	3,170	7,318
8	부산서부지원	222	3,001	295	3,798	7,316
9	평택지원	290	3,108	291	3,579	7,268
10	남양주지원	367	3,737	243	2,846	7,193
11	대구서부지원	209	2,819	230	3,911	7,169
12	부천지원(김포시 제외)	248	3,009	236	3,201	6,694
13	순천지원	251	2,579	238	2,814	5,882
⋮	⋮	⋮	⋮	⋮	⋮	⋮
43	장흥지원	19	199	17	332	567
전국 지원 평균		175	1,809	149	1,903	4,036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김포시의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5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김포시의 관할 법원 변경은 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김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 ③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인구와 사건 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김포시의 관할 법원이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되면, 부천지원보다 북부지원이 김포시 경계에서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김포시는 지난 10년간 자연증가 및 외부유입 등으로 연평균 약 2.3만 명 인구가 급증(2009년 22.6만 명→2019년 45,8만 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2024년 48.7만 명→2030년 70만 명 예상)³⁾, 현재와 같이 김포시의 관할이 부천지원으로 존속되는 경우 확대되는 도시규모에 따라 법률 서비스 이용 불편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⁴⁾.

3) 김포시,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 2022. 1., pp. 135~149

4) 제20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8. 11. 27., 2019. 7. 16., 2020. 3. 3.) 심사과정

○ 한편, 김포시의 인구가 현재 부천지원 관할인구의 약 3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포시의 관할 법원을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천지원의 관할 사건 수 등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고, 현재 김포시를 제외한 상태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북부지원의 규모 등의 재설계가 불가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재 가사사건의 경우 김포시의 관할 법원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인데, 개정안과 같이 **일반사건**에 대한 김포시의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면서도, **가사사건**에 대한 김포시의 관할 법원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 유지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북부지원의 개원 예정일인 2025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에 북부지원 청사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해 북부지원의 개원일을 2028년 3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의안번호 제7258호, 모경종의원 대표발의)이 함께

에서 김포시의 관할 법원을 결정할 당시 김포시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측면 이외에 각 법원의 관할 인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향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5)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가정법원 관할구역 현황

일반사건	인천지방법원(본원)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옹진군
	북부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가사사건	인천가정법원(본원)	인천광역시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 당시 인천가정법원 북부지원은 신설하지 않음.

계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라.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과 같이 김포시의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김포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북부지원의 경우 청사공간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부천지원의 경우 부천시만 관할구역으로 남게 되어 지원으로서 위상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김포시의 관할 법원을 북부지원으로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가사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은 부천지원으로 남게 되어 같은 북부지원 관할구역인 계양구·서구·강화군과 김포시의 가사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이 다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71